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38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9.

발 의 자 : 김문수 · 주철현 · 이주희
정을호 · 백승아 · 이광희
민형배 · 김남근 · 김우영
민병덕 · 최혁진 · 허성무
한창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민간 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「근로기준법」에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, 이를 금지하고 있음.

그런데 교육 관계 법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과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, 교육공무원에게는 「근로기준법」 상의 해당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교육공무원이 지켜야 할 성실·품위유지 의무, 행동강령, 고충처리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고 있으나 대처방식이 간접적이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교육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, 피해자

구제 및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
교육공무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 교육 업무에 전념할
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의2 신설).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9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 ① 교육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육공무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(이하 “직장 내 괴롭힘”이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교육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3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사용자”는 “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”으로, “근로자”는 “교육공무원”으로 본다.
-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및 회복을 위하여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피해신고 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9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 ① 교육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육공무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(이하 “직장 내 괴롭힘”이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<u>② 교육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3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사용자”는 “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”으로, “근로자”는 “교육공무원”으로 본다.</u> <u>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및 회복을 위하여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.</u> <u>④ 제3항에 따른 피해신고 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</u>

	<u>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--	--------------------